

인천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3가단2754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박재권

**피고**1. B

2. C

3. D

4. E

5. F

6. G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추홀, 담당변호사 이지은

**변론 종결**2024. 8. 22.

**판결 선고**2024. 9. 26.

##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22.

12. 29. 접수 제854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67,232,57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3.부터 2024. 9.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은 70,402,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부터 2023. 10.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D은 157,460,71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20.부터 2023. 9.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피고 E은 36,00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4.부터 2023. 10.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피고 F은 10,98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9.부터 2023. 9.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바. 피고 G은 3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6.부터 2023. 10.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85%는 피고 B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 청 구 취 지

### 주 위 적 청 구 취 지

1. 주문 제1항과 같다.

2.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에게 89,302,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주문 제2의 나, 다, 라, 마, 바항과 같다.

## 예비적 청구취지

###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47,151,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은 35,201,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D은 78,730,3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피고 E은 18,001,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피고 F은 5,490,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바. 피고 G은 1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이유

### 1. 기초사실

####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유일한 상속인이고, 피고 B, C, D은 망인의 형제자매이다. 피고 E은 피고 B의 배우자이고, 피고 F, G은 피고 B의 자녀들이다.

#### 나. 망인의 치료 및 사망

망인은 2022. 11. 8. 복시증상으로 병원에 내원 후 시행한 뇌 MRI 검사 결과 상세불명의 뇌의

행동양식 또는 미상의 신생물이 발견되어 2022. 11. 16.부터 2022. 11. 20.까지 J병원에서 입체정위 뇌조직 검사수술을 받았고, 2022. 11. 20.부터 2022. 12. 3.까지 K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이후 망인은 J병원으로 전원하였다가 2022. 12. 26.부터 L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23. 1. 18. 사망하였다.

#### 다.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아파트,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및 금원 이체

- 1)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22. 12. 29. 접수 제85493호로 피고 B에게 2022. 12. 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 2) 피고 C은 2023. 1. 2. 망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차량(이하 '이 사건 코란도'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피고 D은 2023. 1. 16. 망인이 지입차주였던 (차량번호 2 생략)(현재(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이하 합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이라 한다).
- 3) 망인의 M은행 계좌에서 아래 <표1>기재와 같이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금전이 이체되었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좌이체'라 한다).

|            |                                              |                             |
|------------|----------------------------------------------|-----------------------------|
| B          | 2022-12-29                                   | 6,000,4002,020,4006,000,000 |
| 2022-12-30 | 6,000,0006,000,0006,000,000                  |                             |
| 2022-12-31 | 6,000,4006,000,4006,000,4004,230,005,270,000 |                             |
| 2023-01-01 | 780,0006,000,0006,000,000                    |                             |
| 2023-01-13 | 5,000,400                                    |                             |
| 소계         | 89,302,800                                   |                             |
| C          | 2022-12-05                                   | 6,000,400                   |
| 2022-12-29 | 6,000,4006,000,400                           |                             |
| 2022-12-30 | 6,000,0006,000,0002,000,000                  |                             |
| 2022-12-31 | 6,000,4006,000,4006,000,400                  |                             |
| 2023-01-01 | 6,000,400                                    |                             |

|                   |                             |                                               |
|-------------------|-----------------------------|-----------------------------------------------|
| B                 | 2022-12-29                  | 6,000,4002,020,4006,000,000                   |
| 소계                | 56,002,800                  |                                               |
| D                 | 2022-12-28                  | 6,000,4006,000,4006,000,4006,000,400          |
| 2022-12-29        | 6,000,4006,000,4002,000,400 |                                               |
| 2022-12-30        | 6,000,000                   |                                               |
| 2023-01-13        | 5,300,400                   |                                               |
| 2023-01-20        | 2,500,400                   |                                               |
| 소계                | 57,804,000                  |                                               |
| E                 | 2023-01-02                  | 6,000,4006,000,4006,000,4006,000,4006,000,400 |
| 2023-01-04        | 6,000,400                   |                                               |
| 소계                | 36,002,400                  |                                               |
| F                 | 2022. 12. 26.               | 6,000,400                                     |
| 2023. 1. 19.      | 4,000,400980,400            |                                               |
| 소계                | 10,981,200                  |                                               |
| G                 | 2022. 12. 16.               | 330,000                                       |
| 총합계: 250,423,200원 |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21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 주장의 요지

### 가. 주위적 청구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망인은 2022. 11. 18. 입체 정위 뇌조작검사 수술을 받은 후부터 2023. 1. 18. 사망할 때까지 정상적인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망인이 2022. 12. 27.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였음을 원인으로 2022. 12. 29.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로되었으나, 이는 망인의 의사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망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 B가 임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 망인이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망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들이 임의로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표1> 기재와 피고들의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코란도에 관하여, 피고 D은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이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① 피고 B는 계좌이체한 돈 89,302,800원, ② 피고 C은 70,402,800원(= 2023. 1. 기준 이 사건 코란도의 가액 14,400,000원 + 계좌이체한 돈 56,002,800원), ③ 피고 D은 157,460,717원(= 2023. 1. 기준 이 사건 화물차의 가액 99,656,717원 + 계좌이체한 돈 57,804,000원), ④ 피고 E은 계좌이체한 돈 36,002,400원, ⑤ 피고 F은 계좌이체한 돈 10,981,200원, ⑥ 피고 G은 계좌이체한 돈 33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금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나. 예비적 청구(유류분 반환청구)

설령,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이전등록 및 계좌이체가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유류분 부족액으로서 원고에게 아래 <표2>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            |             |   |            |             |
|------|---------------------------------------------------------------------------------------------------------------------------------------------------------------------------------------------------------------------------------------------|------------|-------------|---|------------|-------------|
| 피고 B | 294,302,800원) 원고는 2024. 6. 18.자 준비서면에서 예비적 청구만 인용될 경우 유류분 산정시 7,277,579원(=피고들이 망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돈 29,347,800원 - 피고들이 망인을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돈 22,070,221원)도 피고 B의 특별수익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 따라 기재한다. | 1/2        | 147,151,400 | 0 | 0          | 147,151,400 |
| 피고 C | 70,402,800                                                                                                                                                                                                                                  | 35,201,400 | 0           | 0 | 35,201,400 |             |
| 피고 D | 157,460,717                                                                                                                                                                                                                                 | 78,730,358 | 0           | 0 | 78,730,358 |             |
| 피고 E | 36,002,400                                                                                                                                                                                                                                  | 18,001,200 | 0           | 0 | 18,001,200 |             |
| 피고   | 10,981,200                                                                                                                                                                                                                                  | 5,490,600  | 0           | 0 | 5,490,600  |             |

|         |                                                                                                                                                                                                                                             |         |             |   |         |             |
|---------|---------------------------------------------------------------------------------------------------------------------------------------------------------------------------------------------------------------------------------------------|---------|-------------|---|---------|-------------|
| 피고<br>B | 294,302,800원) 원고는 2024. 6. 18.자 준비서면에서 예비적 청구만 인용될 경우 유류분 산정시 7,277,579원(=피고들이 망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돈 29,347,800원 - 피고들이 망인을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돈 22,070,221원)도 피고 B의 특별수익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 따라 기재한다. | 1/2     | 147,151,400 | 0 | 0       | 147,151,400 |
| F       |                                                                                                                                                                                                                                             |         |             |   |         |             |
| 피고<br>G | 330,000                                                                                                                                                                                                                                     | 165,000 | 0           | 0 | 165,000 |             |

###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망인의 의사능력 여부

1) 관련법리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등 참조), 의사무능력에 해당함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53093, 531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록, 계좌이체(이하 통틀어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당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그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증여는 망인이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① 2022. 11. 당시 망인에 대한 I병원의 의무기록(갑 제9호증)에는 "1개월 전부터 기억력 감퇴"(12쪽), "간호사가 묻는 질문에 대답 잘 해주는 모습이나 새벽동안 있었던 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임"(20쪽), "밤 사이 일어난 상황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임"(24쪽), "이름 외에 지남력 없어 재인지 시킨 후 확인하였으나 대답하지 못함"(36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이후 2022. 12. 초중순경 당시 망인에 대한 J병원의 의무기록(갑 제10호증의 4)에는 "대화

가능하나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많이 함"(5쪽), "환자 lab 이상 동반되어 있는 상태이나 현재 주 문제인 의사소통 불가, 의식명료하지 않은 점은 high grade glioma에 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 소통 불가하며 행동 제어되지 않아 식이 섭취 불량했을 것으로 생각되며"라는 기재가 확인된다(13쪽).

③ 2022. 12. 27.부터 2023. 1.경까지의 L병원 의무기록의 상태변화기록(갑 제12호증의 1)에는 망인의 의식상태 중 '의사소통' 란에 '어려움'이라는 기재가 있고, 간호기록(갑 제12호증의 2)에는 망인의 현병력으로 "눈맞춤, 고개로 대화했다 함. 말로 대화는 불가"라는 기재가 있다(14쪽).

위와 같은 망인에 대한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2022. 10.경부터 기억력 감퇴 증상을 겪고 있었는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악화되었고, 특히 2022. 11. 18.에 뇌수술을 받은 이후로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2022. 12. 26. L병원에 입원할 무렵에는 이미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어서 말로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이 사건 증여가 있었던 2022. 12.경부터 2023. 1.경에는 일상생활이나 금전 관리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중증도의 의식 장애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증여 당시 의사능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동영상(을 제7호증)과 녹취파일(을 제9호증의 1, 10호증의 1)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위 동영상을 살펴보면 망인은 질문에 대하여 완결된 문장을 구사하여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어눌한 말투로 짧게 답변하거나, 고개를 가로로 젓는 몸짓으로 대답하는 모습이 확인되어 의사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녹취파일은 대화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가 있었던 2022. 12. 16. 이전에 녹음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녹취 당시 망인의 의사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이 사건 증여 당시에도 망인의 의사능력에 문제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오히려, 망인이 이 사건 증여 당시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굳이 위와 같은 동영상을 촬영할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 **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에 관한 판단**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 **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발생 망인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 및 계좌이체 당시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C, D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진 사실, 망인의 계좌에서 피고들의 계좌로 위 기초사실 다.항의 <표1> 기재와 같이 계좌이체가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 당시 이 사건 코란도의 가액이 14,400,000원, 이 사건 화물차의 가액이 99,656,71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7, 8, 14, 16,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망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속한 원고에게 위 각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

피고 C은, 망인이 2004. 1.경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하여 망인에게 58,4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코란도 및 계좌이체된 금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피고 D

피고 D은, 망인이 피고 D에게 이 사건 화물차를 증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이러한 망인의 의사에 따라 위 화물차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피고 B

피고 B는, 피고 B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 중 아래 <표3> 기재 금액 합계 22,070,221원은 망인을 위해 지출된 비용 내지 상속재산으로 지급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업무에 관한 비용 | N         | 4,230,000 |
|-----------|-----------|-----------|
| O         | 6,050,000 |           |
| P         | 1,600,000 |           |
| 병원비       | 1,814,000 |           |

|           |            |           |
|-----------|------------|-----------|
| 업무에 관한 비용 | N          | 4,230,000 |
| 간병비용      | 물품 구입      | 875,900   |
| 통신비       | 46,450     |           |
| 기타 생활비    | 인터넷        | 35,981    |
| 세입자 관리비   | 102,290    |           |
| 장례식장      | 4,970,000  |           |
| 장례비용      | 장례식장 음식    | 1,295,600 |
| Q공원       | 1,050,000  |           |
| 합계        | 22,070,221 |           |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2022. 12. 16. 망인의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한 하도급업무 관련 비용으로 N에게 4,230,000원 및 O에게 6,050,000원, 2023. 5. 31. P 명목으로 1,600,000원, 2022. 12. 20.부터 2023. 1. 18.까지 망인의 의료비 명목으로 합계 2,689,900원(='L병원' 병원비 등 1,814,000원 + 물품구입비 875,900원), 2023. 1. 26.부터 2023. 2. 3.까지 생활비 명목으로 합계 184,721원(=통신비 46,450원+ 인터넷사용료 35,981원 + 세입자 관리비 102,290원), 망인에 대한 장례비 명목으로 7,315,6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금원의 합계 22,070,221원은 망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거나 상속에 관한 비용(장례비용)으로 상속재산에서 지급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이를 앞서 본 피고 B의 부당이득반환금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의 계좌에서 2022. 12. 4.부터 2023. 1. 31.까지 30차례에 걸쳐 출금된 금원 합계 29,347,800원은 피고 B가 18,339,500원을, 피고 C이 11,008,300원을 각 출금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위 돈 29,347,800원에 대한 반환청구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피고 B가 망인을 위해 지출한 돈이라고 주장하는 22,070,221원을 수동채권으로 상계하면 오히려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 7,277,579원이 남게 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금원 합계 29,347,800원이 피고 B, C이 출금하여

소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 G

피고 G은, 자신이 망인의 계좌에서 이체받은 돈은 피고 H이 피고 B의 집에서 거주할 당시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하여 이용한 긴급 사설구급차를 이용하였는데, 위 구급차의 비용은 편도 8만 원, 야간의 경우 1만 원이 추가되어 9만 원이었고, 차량을 총 4번 탑승하는 동안 피고 G이 비용을 우선 지출한 다음 2022. 12. 16. 위 돈을 다시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 F

피고 F은, 자신이 망인의 계좌에서 이체받은 돈은 피고 B와 같이 망인을 간병하면서 지출한 물품 비용을 이체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①피고 B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② 부당이득반환으로서, ㉠피고 B는 망인 명의 계좌에서 이체된 돈 89,302,800원에서 망인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되는 22,070,221원을 공제한 67,232,579원(=89,302,800원-22,070,221원), ㉡피고 C은 70,402,800원(= 2023. 1. 기준 이 사건 코란도의 가액 14,400,000원 + 망인 명의 계좌에서 이체된 돈 56,002,800원), ㉢피고 D은 157,460,717원(= 2023. 1. 기준 이 사건 화물차의 가액 99,656,717원 + 망인 명의 계좌에서 이체된 돈 57,804,000원), ㉣피고 E은 망인 명의 계좌에서 이체된 돈 36,002,400원, ㉤피고 F은 망인 명의 계좌에서 이체된 돈 10,981,200원, ㉥피고 G은 망인 명의 계좌에서 이체된 돈 33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즉,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B는 67,232,57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3. 1. 13.부터 피고 B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9.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70,402,8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3.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3. 10.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D은 157,460,71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3. 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3. 9. 2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E은 36,002,4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3. 1.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3. 10.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F은 10,981,2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3. 1.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3. 9.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G은 3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2. 12.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3. 10.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이 망인의 이 사건 증여행위가 의사능력 상실로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원인을 인정하는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의 공제주장이 받아들여져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일부 기각되더라도 위 증여행위가 유효임을 전제로 한 예비적 청구(유류분 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질 여지는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공제 및 상계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 D, E, F, G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최유나

별지

7,277,579원(=피고들이 망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돈 29,347,800원 - 피고들이 망인을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돈 22,070,221원)도 피고 B의 특별수익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 따라 기재한다.